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만 해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의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일반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2. 해당 전문약사 과목의 업무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에 따른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발급)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교육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 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8조(시험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9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에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 약사 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생년월일·약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 합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인정 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4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중 약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 영 제4조에 따른 자격인정에 대하여 2023년 4월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실무경력 인정기관) 「전문 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 호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1.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 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한다)</u> <u>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u> <u>제3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u> <u>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u>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만 해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정
기관이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의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전문
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일반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2. 해당 전문약사 과목의 업무
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부합
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에
따른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5조(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발급)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 지정의 취소) 보건복
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
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 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8조(시험의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
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
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9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에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
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
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약사 자
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
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본
2. 약사 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
티미터)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

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생년월일·약
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수
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전문약사 수련 교육 수료증 사
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
티미터) 1장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
으로부터 시험 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 합격자에게 별지 제
5호서식의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약사 자격 관리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

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전문약사 자격인정 번호 및 자
격인정 연월일
3.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
일
4. 약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4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
정된 것 외에 전문약사 자격증
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
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중 약
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 영 제4조에 따른 자격인
정에 대하여 2023년 4월8일을

	<u>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부</u> <u>칙</u> <u>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기 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1. 기관 일반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수수료
	2. 해당 전문과목의 업무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 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서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과 정 명: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 호

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약사면허증번호 제 호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기관에서
()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
다.

년 월 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의 장

직인

응시원서 (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수험 번호		면허 번호		약사면허 취득일		사 전 3.5cm×4.5cm ※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인터넷 접수시 50 킬로바이트 이하 jpg 파일)			
성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응시과목									
현주소									
국 적		연락처		이메일					
학 력	구분	취득 연월일			수여대학				
	학사								
	석사								
	박사								
실 무 경 력	근무기간			실무경력 인정기관		※ 증빙서류 별도제출			
	~								
전 문 과 목 수 려 교 육	근무기간			수련 교육기관					
	~								
위의 본인은 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로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험의 정지, 합격 의 무효 또는 자격인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험번호	면허번호	수험표		사 전 3.5cm×4.5cm ※ 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인터넷 접수시 50 킬로바이트 이하 jpg 파일)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성명		생년월일		
응시과목				
※주의: 이 수험표는 자격시험시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년 월 일 ○○○○○○장(직 인)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호
전문약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 문 과 목:
「약사법」 제83조의3 및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